

지방회계전문기관 지정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
신청인	기관명	사업자등록번호
	대표자 성명	전화번호
	주소	

「지방회계법」 제1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지방회계전문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법인대표자)

(서명 또는 인)

행정안전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1. 지방회계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. 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 제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조직 현황에 관한 서류 3. 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 제8조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등 전문자격을 취득한 인력 보유 현황에 관한 서류 4. 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 외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에 관한 서류 5. 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 제8조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조사·연구·평가 또는 상담·지원 등을 한 실적에 관한 서류(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

처리 절차

신청서 작성 신청인	➔	접수 행정안전부	➔	확인·검토 행정안전부	➔	지정 행정안전부
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